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23호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4 호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 회 사 무 국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5 호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 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34호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안 제10조 ~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0. ~ 11. 16.(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규진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10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안 제10조 ~ 제1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민법」제997조, 제1005조, 제1019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조
- 「법률구조법」제2조, 제2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빋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청 인				
신 청 내 역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 행 사 항 및 결 과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7조(지원방법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지원방법 등)에 따른 예산 발생 비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조례안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따라 정보제공, 홍보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

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 8. (생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법률구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35호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안 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0. ~ 11. 16.(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11
----------	------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이정순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안 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남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제5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함에 따른 홍보물 제작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기존에 세워진 [약물오남용홍보물 제작] 예산을 활용 홍보할 계획이며,
 -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을 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